용인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

제정 2015. 7.28 규칙 제797호 일부개정 2016. 5.27 규칙 제846호 일부개정 2017. 7.18 규칙 제877호

-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용인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지정·인정 신청) 「용인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」(이하 "조례"라 한다) 제13조제3항에 따라 향토문화재로 지정·인정받고자 하는 소유자·보유자(보유단체)(이하 "소유자 등"이라 한다)는 향토문화재 지정·인정 신청서 (별지 제1호서식)를 용인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3조(지정서 등 교부) ① 시장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향토유적 지정 서(별지 제2호서식) 또는 향토민속 보유자(보유단체) 인정서(별지 제3호서 식)를 향토문화재 소유자 등에게 교부한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서 및 인정서를 교부할 경우에는 조례 제14 조제2항에 따라 교부 내용을 향토문화재 지정서 및 인정서 교부대장(별지 제4호서식)에 등록·관리하여야 한다.〈개정 2016. 5. 27〉
- 제4조(관리자 지정서) 시장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향토유적 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향토유적 관리자(단체) 지정서(별지 제5호서식)를 교부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7. 7. 18〉
- 제5조(점검) 시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향토문화재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대장(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)에 등록·관리하여 야 한다. 다만, 구청장은 연 2회(2월, 8월) 점검한 후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, 시장은 그 내용을 관리대장에 등록·관리하여야 한다.
- 제6조(경비보조 기준)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 제20조에 따른 향토유적의 보호·관리 또는 향토민속 공개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(10분의 7이내)를 보조할 수 있다. 다만, 향토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

용인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

경비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. 〈개정 2016. 5. 27〉

- 제7조(보조금 교부신청) 제6조에 따라 경비의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6. 5. 27〉
 - 1. 향토유적의 공사, 수리 등의 보호·관리와 향토민속 공개행사 및 향토 문화재 활용사업을 위한 계획서(사진 포함)
 - 2. 제1호에 따른 경비보조가 필요한 사유와 소요경비 및 자부담의 재원조 달방안(자부담 확약서 포함)
 - 3. 지정 또는 인정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준하는 향토문화재의 기본 정보
 - 4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제8조 삭제〈2017. 7. 18〉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6, 5, 27 규칙 제846호〉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7. 7. 18 규칙 제877호〉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 〈개정 2017. 7. 18〉

(1쪽)

향토문화재 지정·인정 신청서										
문화재	① 지정·인정 종류	□ 향토유적	□ 향토민속	ì						
구분	② 유형/종목									
	③ 명칭 한글		한자							
	의 성정 영문									
	④ 시대/연대									
	⑤ 소재지	도로명주소								
	① 도세시	지번주소								
대상	⑥ 구조/형식/형태									
문화재 현황	⑦ 재료/품질									
	⑧ 수량/규모/크기									
	⑨ 현재 용도/기능									
	① 소유자(단체)	성명(명칭)	※성별 기재	전화번호						
		주소								
	① 연혁/유래/특징									
① 관리자	성명(단체명)		II	대표자 의 경우)						
14 선디자	지정·인정									
∅ –) =) ⋆;	신청 사유									
	l정 가치 및 근거기준									
「용인	시 향토문화재 보호 3	^{돈례} 」 제13조제	3항에 따라	위와 같이	향토문화자	· 지				
정·인정	신청서를 제출합니다.									
				년	월	일				
	신청인 주소:									
	성	명:	(인)							
용인시장 귀하										
구비 2. 3. 서류 4.	문화재의 연혁·특징, 지 사진자료(항공 또는 위성사진 건축물대장, 등기사항증 소유자 동의서(신청인이 이력서 및 증명자료(향퇴	원경, 근경, 전경 서명 명서(건물), 토지(소유자와 다른	ll부 현황 2,000× (임야)대장, 등 경우에 한정힘	1,500픽셀 이상 -기사 항증명 / })	의 디지털파일 서(토지) 등					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

향토문화재 지정·인정 신청서 작성요령

- ① 지정·인정 종류: 문화재에 따라 햣토유적(지정), 햣토민속(인정)을 각각 구분하 여 표시합니다.
- ② 유형/종목: 「문화재보호법 시행령」 별표 1의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에 따라 적습니다. (예) 목조건축물류/궁전, 석조건축물류/석탑
- ③ 명칭
- 문화재의 성격·유형·시대 등 그 대표성·상징성을 나타내거나 일반에 널리 알려진 명칭을 부여합니다.
- 순수한 고유 명칭만으로는 일반인이 해당 문화재나 소재 지역을 알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유 명칭 앞에 행정구역명 또는 고유한 지명을 부여합니다.
- 다만, 문화재 지정·인정 명칭의 부여기준 등에 관련한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.
- ④ 시대/연대
- 석기시대, 청동기시대, 철기시대, 삼한시대, 삼국시대, 고구려, 백제, 신라, 가야, 발해, 통일신라, 고려, 조선, 대한제국기, 일제강점기 등을 적습니다. - 다만, 건립·제작·조성 기간 및 연대가 정확히 밝혀진 경우에는 이를 적습니다.
- ⑤ 소재지
- 행정구역상의 도로명 주소를 적되, 소재지와 지번(地番)을 함께 적습니다.
-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숫자가 앞선 지번이나 가장 핵심구역으로 판단되는 지 번을 대표 지번으로 적고 그 뒤에 '외' 또는 '등'을 붙입니다.
- ⑥ 구조/형식/형태: 학문적으로 정의된 구조나 형식·형태 등을 적습니다. 향토민 속 신청 시에는 생략 가능 합니다.
- ⑦ 재료/재질: 문화재를 이루는 주된 재료 및 재질을 적습니다. 향토민속 신청 시 에는 생략 가능 합니다.
- ⑧ 수량/규모/크기: 해당 문화재의 성격에 맞게 수량(동수, 기수 등), 규모(층수, 높 이, 필지 수 등) 및 크기(면적 등)를 적습니다. 향토민속 신청 시에는 생략 가 능 합니다.
- ⑨ 현재 용도/기능: 현재 쓰이고 있는 용도, 기능 및 역할 등을 적습니다. 향토민속 신청 시에는 생략 가능 합니다.
- ⑩ 소유자(단체): 해당 문화재(지정구역)의 소유자(단체)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, 향 토민속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유자(보유단체)에 대한 사항을 적습니다.
- ① 연혁/유래/특징
- 문화재의 연혁, 유래 및 특징에 대하여 중요 내용을 중심으로, 개조식(個條式)으 로 간결하게 적습니다.
- 상세한 내용은 구비서류로 붙여야 합니다.
- ① 관리자: 조례 제18조에 따른 문화재의 관리자 지정·인정 계획 및 사유를 적습니 다. 향토민속의 경우에는 생략 가능합니다.
- ① 지정·인정 가치 및 근거기준
- 문화재의 지정·인정 가치 및 특징 등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간결하게
 - ·역사적·학술적·예술적·경관적·민속적·기술적 가치(중요한 시대정보, 대표 성, 희소성, 상징성, 역사적 사건 및 저명 인물 연관성, 예술적 · 민속적 · 기술 적 가치 등)
- 상세한 내용은 구비서류로 붙여야 합니다.

(3쪽)

향토문화재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(예시)

☐ 향토문화재가 건축물·구조물 등인 경우

(면적:제곱미터)

연번 명칭 ^시	시대/ <i>구조</i> /형식/ 연대 형태	크기/ 수량	9. 5	소재지 <i>/</i> 지번	소유자		관리자		점유자			
긴킨	70 70	연대	형태	수량	9-7	/지 번	성명	주소	성명	주소	성명	주소
계												

□ 향토문화재가 토지인 경우

(면적:제곱미터)

									· ·		
연번	소재지	지번.	지목	면적	지정 면적	소	소유자		관리자		1유자
22	고세시	기원	7	Ţ	면적	성명	주소	성명	주소	성명	주소
계											

297mm×210mm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

[별지 제2호서식] (앞쪽)

용인시 향토유적 제 호 향토유적 지정서 명 칭: 소 재 지: 수 량: 소유자(주소): 「용인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」 제13조에 따라 위 문화재를 용인시 향토유적 제 호로 지정합니다.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직인

268mm×380mm[인쇄용지(특급) 120g/m²]

(뒤쪽)

				(1) 7/						
소유자	주소	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	발급 또는 재발급 연·월·일	기록자						
	(변경사항)									
소유자	주소	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	변경 연·월·일	기록자						

- ※ 주의사항: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붙여 신고하여야 합니다.
 - 1. 향토유적의 소유자,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
 - 2. 향토유적 소유자의 성명·주소가 바뀐 경우

[별지 제3호서식] 〈개정 2017. 7. 18〉

(앞쪽)

용인시 향토민속 제 호

향토민속 보유자(보유단체) 인정서

종 목:

성명(단체명):

생년월일(법인번호):

주 소:

사진 3.5cm×4.5cm ※ 단체의 경우 생략

「용인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」 제13조에 따라 위 사람(단체)을 용인시 향토민속 제 호의 보유자(보유단체)로 인정합니다.

년 월 일

용 인 시 장 직인

210mm×297mm[보호용지(1종) 120g/m²]

(뒤쪽)

		(귀속
주소	변경 연·월·일	기록자

[※] 주의사항: 보유자(보유단체)의 성명·주소가 바뀐 경우에도 이 인정서를 붙여 신고 하여야 합니다.

[별지 제4호서식]

향토문화재 지정서 및 인정서 교부대장

교부	교부	문화재		지정・	지정・	문화재	소재지	소	유자/보유자	관리	가
· 번오	일자	유형	재명	인정 번호	인정 연·월·일	지정·인정 내역	또는 보관 장소	주소	성명 (생년.월.일/성별)	주소	성명

※ 주요 작성요령

- 문화재 유형: 향토문화재 유형을 구분하여 기재(예: 유적 또는 민속)
- 문화재명: 향토문화재 세부 명칭 기재(예: 000서적)

[별지 제5호서식]

제 호
향토유적 관리자(단체) 지정서
□ 향토유적
○ 유적명칭 :
○ 지정번호 :
○ 소 재 지 :
□ 관리자
○ 성명(단체명) :
○ 주 소:
○ 대 표 자 :
「용인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」 제18조에 따라 위 사람(단체)을 향토유적 관리자(단체)로 지정합니다.
년 월 일
용 인 시 장 직인

210mm×297mm[보호용지(1종)120g/m²]

[별지 제6호서식] (1쪽)

<u>향토유적 관리대장</u>

유적 종류				지정번호		
rd 키	한글				한자	
명칭	영문					
분야						
지정일				해제일		
구조				형식/형태		
작가 또는 제작자				규격/크기		
수량/면적				연대/시대		
소재지/ 보관 장소						
	주소			ı		
소유자	성명 (생년월일/성별)			전화번호		
관리자 또는	주소					
관리단체	성명			전화번호		
점유자	주소					
심규사	성명			전화번호		
지정사유						
내용 (연혁, 유래, 전설 등)						
· 항						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

(2쪽)

용인시 향토유적	제 호 □□□□							
관리 내용(보수·정비/변동사항 등)								
날짜	내용							

(3쪽)

용인	시 향토유적 제	Ĭ							
	위치도/실측도/사진								
제목			종류						
									
제목			종류						

[별지 제7호서식] (1쪽)

	향토민속 관리대장							
민속 종류			7	시정번호				
명칭	한글			한자				
ିପ ିପ	영문							
지정일				해제일				
종목 설명 및 지정 사유								
관리 연혁								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]

(2쪽)

용	용인시 향토민속 제 _ 호 □□□□□□										
향토민속 전승자											
전승 구분	성명	생년월일/ 성별	인정일	해제일	해 제 사 유	기능・예능	주소	전화번호			

(3쪽)

용	인시	향토민속 제	<u></u>			
사진						
제	목			종	류	
				•		
				ı		
제	목			종	류	